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3구합17023 경정거부처분취소
원 고	주식회사 [redacted]
피 고	[redacted]시장
변 론 종 결	2015. 4. 29.
판 결 선 고	2015. 5. 13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3. 4. 25. 원고에게 한 2010. 취득세, 농어촌특별세, 등록세 및 교육세 75,900,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가. 원고는 2010. 12. 20. [redacted] 주식회사로부터 [redacted]시 [redacted]면 [redacted]리 143-1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1,650,000,000원에 매수하여 2010. 12. 27.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각 33,000,000원, 농어촌특별세 3,300,000원, 지방교육세 6,600,000원 합계 75,900,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.

나.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감면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3. 2. 28. 피고에게 위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, 2013. 4. 25.경 피고로부터 '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'는 이유로 그 경정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통지받았고, 이에 불복하여 2013. 5. 31.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13. 11. 21.경 각하결정을 받았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11, 1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세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경정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가 그 경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다. 판단

1)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,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,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,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(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참조).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미 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.

2) 이 사건에 적용될 구 지방세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82조는 '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'고 규정하고 있고,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다. 그런데 국세기본법은 1994. 12. 22.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를 모두 포함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가 위 개정 이후에는 제45조에서 증액수정신고만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4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감액경정을 구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했지만, 구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제도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법정의 후발적 사유만으로 한정되는데다가 증액은 물론 감액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제도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지방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 외에 다시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,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(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).

3) 한편, 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지방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, 위 법률 부칙 제1, 2조에 의하면 위 법은 2011. 1. 1.부터 시행하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,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, 2호, 제12의2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, 등록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에,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각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위 법 시행일 이전인 2010. 12. 27.에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결국 위 법 시행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위 취득세, 등록세,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.

4)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기는 하지만 구 농어촌특별세법(2010. 12. 30.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2조는 '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(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)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'고 규정하고 있고,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조는 '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의 예에 의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한편, 지방세기본법 시행 이전의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하여는 앞서 본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바와 같이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, 아래에서 보듯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던바,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그 본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쟁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뿐 취득세나 등록세와 다르게 별도의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.

5) 결국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로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[나아가 살피건대,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'이 법에 의한 처분(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는 위 신고납부세액에 관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항고소송[1]을 제기함으로서 불복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, 그에 관한 쟁송은 같은 법 제73조, 제74조,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신고납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하는데, 원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, 쟁송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더 이상 위 신고납부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]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

1)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81조는 2001. 12. 29.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삭제되어 그 이후부터는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성철

판사 임재남

판사 이미경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관계법령

□ 구 지방세법 (2010. 12. 27.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9조(납세의무의 성립시기)

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.

1. 취득세 :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

2. 등록세 :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

12의 2. 지방교육세 :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

제71조(수정신고)

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.

1.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·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, 건설자금의 이자계산,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

2.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

제73조(이의신청)

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{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}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, 시·군세{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}에 있어서는 시장·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4조(심사청구 및 심판청구)

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, 시장·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야 한다.

②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
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도세[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]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, 시·군세[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·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·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·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 및 구세(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]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.

제82조(「국세기본법」 등의 준용)

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국세기본법」과 「국세징수법」을 준용한다.

□ 국세기본법

제45조의2(경정 등의 청구)
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06-30

□ 지방세기본법 (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)

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

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[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(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)를 말한다]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)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「지방세법」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.

□ 구 농어촌특별세법(2010. 12. 30.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2조(환급)

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(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)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.

□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2010. 9. 20. 개정법률은 그 부칙에서 2011. 1. 1.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.)

제9조(불복)

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의 예에 의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